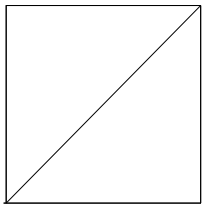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017 - 21호
보 고 연 월 일	2017. 9. 11. (제81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I. 제110차 전체회의 ····· 1

1. 일시 · 장소 ····· 1

2. 참석자(10명) ····· 1

3. 주요 안건 ····· 1

II. 상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1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1

가. 개요 ····· 1

나. 개정법률 주요 요지 ····· 2

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5

2. 양형기준 적용범위 ····· 5

가. 의견 일치 ····· 5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7

3. 유형분류 ····· 8

가. 상습범 처리 방안 ····· 8

나. 특수군 처리 방안 ····· 12

4. 유형분류(안) ····· 13

가. 다수의견(8인) ····· 13

나. 소수의견(2인) ····· 14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15

III. 폭행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16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16

가. 개정법률 주요 요지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16

2. 양형기준 적용범위 ····· 16
가. 의견 일치 ····· 16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16
3. 유형분류 ····· 18
가. 상습범 및 특수군 처리 방안 ····· 18
나. 누범군을 특수군과 분리하여 유형분류할지 여부 ····· 18
4. 유형분류(안) ····· 19
가. 다수의견(8인) ····· 20
나. 소수의견(2인) ····· 20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21
IV. 협박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21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21
가. 개정법률 주요 요지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21
2. 양형기준 적용범위 ····· 21
가. 의견 일치 ····· 21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22
3. 유형분류 ····· 23
가. 상습범 및 특수군 처리 방안 ····· 23
4. 유형분류(안) ····· 23
가. 다수의견(8인) ····· 23
나. 소수의견(2인) ····· 24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24
V.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25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25
가. 개요 ····· 25

나. 개정법률 주요 요지 ····· 25
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25
2. 양형기준 적용범위 ····· 26
가. 의견 일치 ····· 26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26
3. 유형분류 ····· 27
가. 상습범 처리 방안 ····· 27
나. 특수군 처리 방안 ····· 27
4. 체포·감금 유형분류(안) ····· 29
가. 다수의견(5인) ····· 29
나. 소수의견(4인) ····· 30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31
Ⅵ.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 31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31
가. 개요 ····· 31
나. 개정법률 주요 요지 ····· 31
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32
2. 양형기준 적용범위 ····· 32
가. 의견 일치 ····· 32
나.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32
3. 유형분류 ····· 33
가. 상습범 처리 방안 ····· 33
나. 특수군 처리 방안 ····· 34
4. 유형분류(안) ····· 34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35

VII. 향후 일정 ····· 35

【별첨】

■ 구민경, “폭력범죄 중 상해 양형기준 수정 검토 I ”

■ 구민경, “폭력범죄 중 폭행 양형기준 수정 검토 I ”

■ 구민경, “폭력범죄 중 협박 양형기준 수정 검토”

■ 구민경,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I ”

■ 구민경,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I ”

■ 김도연, “폭력범죄 등 6개 범죄 양형기준 수정”

■ 구민경, “6기 수정범죄 추가 검토 I ”

I. 제110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7. 8. 28.(월) 16:00 ~ 20:3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0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구민경, 김혜경, 김도연, 박수정, 이용, 전휴재, 최준혁, 한상규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폭력(상해, 폭행, 협박)범죄, 체포 · 감금 · 유기 · 학대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설정범위 · 유형분류] 검토

II. 상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가. 개요

○ 현행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2012. 6. 18. 의결되어 2012.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폭력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2016. 1. 6.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 삭제되거나 법정형이 변경되었음

○ 위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

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나. 개정법률 주요 요지

(1) 형법

○ 제258조

개정 전	개정 후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2016.1.6.>

○ 제258조의2

개정 전	개정후[신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6.1.6>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 제264조

개정 전	개정 후
제264조(상습범)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폭력행위처벌법

○ 제2조

개정 전	개정후
제2조(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① 삭제<2016.1.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개정 전	개정후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개정 2016.1.6.>

○ 제3조

개정 전	개정후
제3조(집단적 폭행 등)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① 삭제<2016.1.6>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삭제<2016.1.6>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3항과 같다.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

개정 전	개정후
	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개정 2016.1.6.>

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폭력행위처벌법 부분의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해당범죄	개정내용	비고
제2조 제1항	상습군	삭제	형법으로 흡수
제2조 제2항	공동군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변경 X
제2조 제3항	누범군	요건구체화 & 법정형 감소	폭력행위처벌법에만 존재하는 죄명
제3조 제1항	특수군	삭제	형법으로 흡수
제3조 제3항	상습특수군	삭제	형법으로 흡수
제3조 제4항	누범특수군	요건구체화 & 법정형 감소	폭력행위처벌법에만 존재하는 죄명

2. 양형기준 적용범위

가. 의견 일치

(1) 형법 제258조 제3항[중존속상해] ☞ 포함

○ 기존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처벌규정으로, 법정형만 변경된 경우로 설정 대상범죄로 유지함

(2)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1, 2항 ☞ 포함

○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를 규정하였던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었음

○ 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는 형법 제258조의2 제

1항으로 처벌 ⇨ 기존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처벌규정이 형법의 신설조항으로 처벌되는 경우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있음

○ 폭력행위처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구성요건인 특수중상해, 특수중존속상해(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가 신설됨 ⇨ 적용된 사례는 많지 않으나, 형법에 신설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있음

(3)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3항(미수범) ☞ 제외

○ 살인범죄군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군의 미수범은 설정대상에서 제외

(4) 형법 제264조(상습범) 중 제258조의2 ☞ 포함

○ 상습범을 규정하였던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이 삭제되어 형법 제264조(상습범)로 처벌

○ 형법 제258조의2 신설로 폭력행위처벌법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구성요건인 상습특수중상해, 상습특수중존속상해(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가 신설됨

○ 적용된 사례가 존재하지는 않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형기준을 설정할 실익이 있음

(5)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상습군] ☞ 제외(삭제됨)

(6)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항[특수군, 상습특수군] ☞ 제외(삭제됨)

(7)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공동군], 같은 조 제3항[누범군], 제3조 제4항[누범특수군] ☞ 포함

○ 기존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처벌규정으로, 구성요건이 구체화되거나 법정형만 변경된 경우로 설정 대상범죄로 유지함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제1유형 일반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7년↓)	×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10년↓)	×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1/2가중) (10년6월↓/15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1/2가중) (10년6월↓/15년↓)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 변경×)
제2유형 중상해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1년~10년)	×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2년↑)	형법 제258조 제3항(2년~15년)	법정형 변경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3년↑)	×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무기, 5년↑)	×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무기, 3년↑)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1년↑)	×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제1유형 상습.누범. 특수상해	상습상해 상습존속상해 상습중상해, 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1/2가중) -상습상해(10년6월↓) -상습존속상해(15년↓) -상습중상해 (1년6월~15년) -상습중존속상해 (3년↑)	-상습중존속상해 법정형 변경(3년~22년6월) -형법 제264조에 특수상해(제258조의2) 추가 ⇨ 상습특수중상해, 상습특수중존속상해죄 신설 -나머지 법정형 동일	형법 제264조에 아래 내용 추가 -상습특수상해 (1년6월~15년) -상습특수존속상해 (1년6월~15년) -상습특수중상해 (3년~30년) -상습특수중존속상해 (3년~30년)
	상습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	삭제	-상습상해(10년6월↓)

	상습존속상해	1항 제3호(3년↑)	-형법 제264조로 포섭	-상습존속상해(15년↓)
	누범상해 누범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3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2년~20년)	-누범요건 구체화 -법정형 변경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3년↑)	삭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포섭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의 신설로 특수중상해, 특수중존속상해죄 신설	-특수상해 (1년~10년) -특수존속상해 (1년~10년) -특수중상해 (2년~20년) -특수중존속상해 (2년~20년)
제2유형 상습특수. 누범특수 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5년↑)	삭제 -형법 제264조로 포섭	-상습특수상해 (1년6월~15년) -상습특수존속상해 (1년6월~15년)
	누범특수상해 누범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5년↑)	폭처법 제3조 제4항 제3호(3년~25년)	법정형 변경

3. 유형분류

가. 상습범 처리 방안

(1) 다수의견(8인) :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가) 양형기준 전체 체계상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함이 타당함

○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한 범죄군

- 강도, 폭력, 공갈,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아동학대처벌법 제외) ⇨ 특정강력범죄법, 폭력행위처벌법 등 특별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

○ 나머지 범죄군(강간, 사기 등)에서는 상습범을 양형인자로만 반영함

○ 특히, 마약범죄, 체포·감금·유기·학대의 경우, 1/2 가중의 경우에는 양형인자로, 상습범 가중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유형분류함

(나) 상습범 엄벌에 대한 반성적 고려 감안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삭제한 입법취지를 양형기준에 반영할 필요 있음 ⇨ 형법으로 포섭하여 1/2 가중

○ 법정형 '3년 이상', '5년 이상'이던 폭력행위처벌법 규정을 삭제하면서 별도의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지 않음

○ 형법 제264조(10년6월 이하, 1년6월~15년)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3년 이상), 제3조 제3항 제3호(5년 이상)와 법정형 차이 매우 큼

(다) 유형분류는 행위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함

○ 행위자적 요소인 상습성은 유형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음. 기존에는 폭력행위처벌법으로 가중처벌하여 법정형이 높다는 이유로 유형분류를 하게 되었으나, 위 법에서 삭제된 이상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라)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 전례 참고

○ 절도범죄 양형기준 수정(2016. 7. 11. 수정, 2016. 9. 15. 시행) 당시 상습절도를 처벌하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무기, 3년 이상) 삭제로 형법 제332조(1/2 가중)가 적용됨에 따라 '상습성'을 유형분류에서 삭제하고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한 전례 있음

○ 상습절도는 상습상해보다 발생빈도가 높음에도 양형인자로 반영하였으므로, 상습상해도 일관되게 양형인자로 반영할 필요 있음

(마) 동일하게 1/2 가중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가 양형인자로 반영되고 있음

○ 상습상해의 평균형량이 높긴 하나, 법률개정 이후 선고된 상습상해의 사건 수가 많지 않으므로(13건) 공동상해(2,538건)와 평균형량을 단순비교하기 어려움 ⇨ 공동상해의 경우, 4월, 6월, 8월로 선고된 사건 수가 많아 전체적인 평균형량이 낮아진 것임

○ 공동상해가 상습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된 사건 수가 많음

- 공동상해[2012. 7. 2.~2017. 4. 30.]

구분/선고(월)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28	36	총합계	평균
실형	건(명)	5	5	53	9	163	0	88	1	47	51	3	0	4	16	1	9	1	3	459	8.3
	비율(%)	1.1	1.1	11.5	2.0	35.5	0.0	19.2	0.2	10.2	11.1	0.7	0.0	0.9	3.5	0.2	2.0	0.2	0.7	100.0	
집유	건(명)	1	16	319	18	915	1	427	3	196	125	9	1	2	34	0	12	0	0	2079	7.2
	비율(%)	0.0	0.8	15.3	0.9	44.0	0.0	20.5	0.1	9.4	6.0	0.4	0.0	0.1	1.6	0.0	0.6	0.0	0.0	100.0	
전체	건(명)	**6**	**21**	**372**	**27**	**1078**	**1**	**515**	**4**	**243**	**176**	**12**	**1**	**6**	**50**	**1**	**21**	**1**	**3**	**2538**	**7.4**
	비율(%)	0.2	0.8	14.7	1.1	42.5	0.0	20.3	0.2	9.6	6.9	0.5	0.0	0.2	2.0	0.0	0.8	0.0	0.1	100.0	

- 상습상해[2016. 1. 6.~2017. 4. 30.]

구분/선고(월)		6	8	10	12	18	24	30	총합계	평균
실형	건(명)	0	2	2	0	1	3	1	**9**	**17.3**
	비율(%)	0.0	22.2	22.2	0.0	11.1	33.3	11.1	100.0	
집유	건(명)	1	0	0	2	1	0	0	**4**	**12.0**
	비율(%)	25.0	0.0	0.0	50.0	25.0	0.0	0.0	100.0	
전체	건(명)	**1**	**2**	**2**	**2**	**2**	**3**	**1**	**13**	**15.7**
	비율(%)	7.7	15.4	15.4	15.4	15.4	23.1	7.7	100.0	

(바) 상습상해의 전체적인 형량이 일반상해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에 포섭 가능함

○ 2015. 9. 23.(폭력행위처벌법 위헌 결정) 이전 선고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1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6	27	28	30	36	42	48		
폭처법(상습상해)	수	0	0	0	0	0	0	0	0	0	2	3	0	0	0	72	0	0	0	27	0	0	0	1	4	1	1	111	20.4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0.0	1.8	2.7	0.0	0.0	0.0	64.9	0.0	0.0	0.0	24.3	0.0	0.0	0.0	0.9	3.6	0.9	0.9	100.0	

○ 2015. 9. 24. 이후 선고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2	24	28	30		
상습상해	수	0	0	0	0	0	0	3	0	4	7	1	0	0	4	0	0	0	4	0	1[1)]	24	15.00
	비율	0.0	0.0	0.0	0.0	0.0	0.0	12.5	0.0	16.7	29.2	4.2	0.0	0.0	16.7	0.0	0.0	0.0	16.7	0.0	4.2	100.0	

- 위헌 결정 이후 상습상해의 전체적인 선고형량이 낮아짐
- 위헌 결정 이후 상습상해죄의 형량이 일반상해의 권고형량 범위(감경: 2월~1년, 기본: 4월~1년6월, 가중: 6월~2년)에 대부분 포섭되므로, 상습성을 일반상해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도 무리가

1) 상습상해죄와 상습특수협박죄가 경합된 사건, 기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2년~4년9월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선고한 사건임

없음

○ 상습중상해, 상습중존속상해

-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이 0건이므로, 상습성을 중상해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도 무리가 없음

(2) 소수의견(2인) : 상습범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

(가) 일반상해의 평균형량과 의미 있는 차이 존재

○ 일반상해 평균형량 6.1월과 상습상해 평균형량 15.7월은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별도 유형분류가 필요함

- 상해(2012. 7. 1. 이후 형량분포)

구분/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1	24	30	48	총합계	평균
상해	건(명)	11	105	929	1343	1838	2805	509	1046	3	593	346	11	2	89	2	1	27	7	1	9668	6.1
	비율(%)	0.1	1.1	9.6	13.9	19.0	29.0	5.3	10.8	0.0	6.1	3.6	0.1	0.0	0.9	0.0	0.0	0.3	0.1	0.0	100.0	

- 상습상해(2016. 1. 6.~2017. 4. 30.)

구분/선고(월)		6	8	10	12	18	24	30	총합계	평균
상습 상해	건(명)	1	2	2	2	2	3	1	13	15.7
	비율(%)	7.7	15.4	15.4	15.4	15.4	23.1	7.7	100.0	

(나) 법률 개정으로 공동상해와 상습상해의 법정형이 같아졌음에도, 상습상해를 공동상해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존재함

○ 공동상해 평균형량은 7.4월이나, 상습상해 평균형량은 15.7월임

○ 공동상해는 형태가 다양하고 상당히 넓게 인정되나, 상습상해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책임도 중하므로, 공동상해와 같은 유형으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함

- 공동상해(2012. 7. 1.~2017. 4. 30.)

구분/선고(월)		2	3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4	28	36	총합계	평균
공동 상해	건(명)	6	21	372	27	1078	1	515	4	243	176	12	1	6	50	1	21	1	3	2538	7.4
	비율(%)	0.2	0.8	14.7	1.1	42.5	0.0	20.3	0.2	9.6	6.9	0.5	0.0	0.2	2.0	0.0	0.8	0.0	0.1	100.0	

- 상습상해(2016. 1. 6.~2017. 4. 30.)

구분/선고(월)		6	8	10	12	18	24	30	총합계	평균
상습 상해	건(명)	1	2	2	2	2	3	1	13	15.7
	비율(%)	7.7	15.4	15.4	15.4	15.4	23.1	7.7	100.0	

(다) 특수상해의 법정형(1년~10년)과 상습상해의 법정형(1월 15일~10년6월)은 법정형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동일 유형으로 별도 처리가 가능함

(라) 공갈, 체포·감금, 강요, 손괴의 경우에 '상습'을 별도 유형으로 반영하고 있음

(마) 상습범은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와 동일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중한 형량범위를 권고해야 함

나. 특수군 처리 방안

(1) 의견 일치[2)]

○ [특수군]은 상습범(1/2 가중)과 달리 법정형을 특정(1년~10년, 2년~20년)하여 규정하고 있고, 특수상해는 적용된 사건 수가 많으므로[양형기준 시행 후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2,337건],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특수상해를 대유형1 >소유형1 [일반상해]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할 경우, 상해범죄 전체 95%가 일반상해 유형에 포섭되어 특수상해 고유의 사건 특성이 몰각될 우려가 있음

○ 특수상해의 경우, 평균형량이 일반상해보다 3.3월 높고, 6월 미만 선고비율이 0.4%(일반상해는 43.7%), 1년 이상 선고비율은 29.2%(일반상해 5%)로 일반상해와 형량분포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실익이 있음

- 상해(2012. 7. 1. 이후 형량분포)

구분/형량(월)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21	24	30	48	총합계	평균
상해	건(명)	11	105	929	1343	1838	2805	509	1046	3	593	346	11	2	89	2	1	27	7	1	9668	6.1
	비율(%)	0.1	1.1	9.6	13.9	19.0	29.0	5.3	10.8	0.0	6.1	3.6	0.1	0.0	0.9	0.0	0.0	0.3	0.1	0.0	100.0	

- 특수상해(2016. 1. 6.~2017. 4. 30.)

구분/선고(월)		4	5	6	7	8	9	10	12	14	15	16	18	20	21	24	30	36	42	48	84	144	총합계	평균
전체	건(명)	12	1	1109	2	923	10	330	745	21	3	10	123	2	1	46	12	10	2	4	1	1	3368	9.4
	비율(%)	0.4	0.0	32.9	0.1	27.4	0.3	9.8	22.1	0.6	0.1	0.3	3.7	0.1	0.0	1.4	0.4	0.3	0.1	0.1	0.0	0.0	100.0	

2) 다만, 특수군의 경우에도 폭력행위처벌법에서 삭제되어 형법으로 처벌하게 되었으므로, 상습범과 마찬가지로 양형인자로 반영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

4. 유형분류(안)

○ 【의견일치】 부분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	중상해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보복목적 상해			

○ 【의견불일치】 부분

[1]안 ⇛ 다수의견(8인)

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상해			
2	특수중상해 · 누범상해			
3	누범특수상해			

[2]안 ⇛ 소수의견(2인)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 · 특수상해			
2	누범상해			
3	상습특수상해 · 누범특수상해			

가. 다수의견(8인)

○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특수중상해'를 소유형2로 유형분류할지, 양형인자로 반영할지는 추후 형량범위와 함께 재검토하기로 함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10년↓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10년6월↓ 15년↓
	상습상해· 상습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7조	10년6월↓ 15년↓
제2유형 중상해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1년~10년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2년~15년
	상습중상해· 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8조	1년6월~15년 3년~22년6월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3년↑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무기, 5년↑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무기, 3년↑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1년↑

- 2. 특수상해·누범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특수상해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10년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1년6월~15년
제2유형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특수중상해· 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2년~20년
	누범상해· 누범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2년~20년
	상습특수중상해· 상습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2항	3년~30년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누범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3년~25년

나. 소수의견(2인)

○ 상습범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상해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	10년↓
	공동상해·공동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10년6월↓ 15년↓
제2유형 중상해	중상해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1년~10년
	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 제3항	2년~15년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1항	3년↑
	존속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제2항	무기, 5년↑
	보복목적 상해치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3항	무기, 3년↑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보복목적 상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	1년↑

-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상습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상습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7조	10년6월↓ 15년↓
	특수상해·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년~10년
	상습중상해· 상습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8조	1년6월~15년 3년~22년6월
	특수중상해· 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2년~20년
제2유형 누범상해	누범상해· 누범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2년~20년
제3유형 상습특수상해· 누범특수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특수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1년6월~15년
	상습특수중상해· 상습특수중존속상해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2항	3년~30년
	누범특수상해· 누범특수존속상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3년~25년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기존 유형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Ⅲ. 폭행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가. 개정법률 주요 요지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2. 양형기준 적용범위

가. 의견 일치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상습군] ☞ 제외(삭제됨)

(2)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항[특수군, 상습특수군] ☞ 제외(삭제됨)

(3)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공동군], 같은 조 제3항[누범군], 제3조 제4항[누범특수군] ☞ 포함

○ 기존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처벌규정으로, 구성요건이 구체화되거나 법정형만 변경된 경우로 설정 대상범죄로 유지함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개정이 없는 유형은 일부 생략함]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제1유형 일반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2년↓)	×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5년↓)	×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1/2 가중) (3년↓/7년6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1/2가중) (3년↓/7년6월↓)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 변경×)
	운전자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5년↓)	×	
제2유형 폭행치상	폭행치상	형법 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7년↓)	×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7년↓)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신설에 따라 형법 제257조 제1항 대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1년~10년)	하급심에서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한 사례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적용 사례로 나누어짐
	폭행치상 (중상해)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1년~10년)	×	
	특수폭행치상 (중상해)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1년~10년)	형법 제258조의2 신설에 따라 형법 제258조 제1항 대신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을 적용(2년~20년)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적용에 대한 논란 있음
	존속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2항(10년↓)	×	
	존속폭행치상 (중상해)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3항(2년↑)	조문 동일 (2년~15년)	법정형 변경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상습특수폭행	형법 제264조(1/2 가중) -상습폭행(3년↓) -상습존속폭행(7년6월↓) -상습특수폭행(7년6월↓)	×	
	상습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1년↑)	삭제 -형법 제264조로 포섭	(3년↓)
	상습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2년↑)	삭제 -형법 제264조로 포섭	(7년6월↓)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1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7년↓)	-누범요건 구체화 -법정형 변경
	누범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2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1년~12년)	-누범요건 구체화 -법정형 변경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5년↓)	×	
	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1년↑)	삭제 -형법 제261조로 포섭	(5년↓)
	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2년↑)	삭제 -형법 제261조로 포섭	(5년↓)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2년↑)	삭제 -형법 제264조로 포섭	(7년6월↓)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상습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3년↑)	삭제 -형법 제264조로 포섭	(7년6월↓)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2년↑)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1년~12년)	법정형 변경
	누범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3년↑)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2년~20년)	법정형 변경

3. 유형분류

가. 상습범 및 특수군 처리 방안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나. 누범군을 특수군과 분리하여 유형분류할지 여부

(1) 다수의견(8인) : 별도 유형분류(×)

○ 법정형의 차이가 많은 범죄들이 하나의 소유형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범존속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은 사례를 찾기 어렵고, 누범특수폭행 사건도 1건 발견되므로, 법정형에 따라 별도 유형분류를 할 실익이 없음

○ 기존 양형기준 설정 당시에도 누범특수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으로 선고된 사례가 전혀 없어, 이에 대한 형량범위를 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누범폭행과 구분하여 누범특수폭행, 누범특수존속폭행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음

○ 특수폭행(6.6월)과 누범폭행(7.8월)의 평균 형량 차이가 약 1.2월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누범폭행 사건 수(8건)가 많지 않으므로,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실익이 없음

- 특수폭행[2016. 1. 6.~2017. 4. 30.]

구분/선고(월)		2	3	4	5	6	7	8	10	12	18	24	총합계	평균
전체	건(명)	1	2	71	3	194	1	68	27	12	3	1	383	6.6
	비율(%)	0.3	0.5	18.5	0.8	50.7	0.3	17.8	7.0	3.1	0.8	0.3	100.0	

- 누범폭행[2012. 7. 1.~2016. 1. 5.]

구분/선고(월)		6	8	10	12	총합계	평균
전체	건(명)	4	2	1	1	8	7.8

(2) 소수의견(2인) : 별도 유형분류(○)

○ 누범폭행(7년 이하)은 상습폭행(3년 이하), 특수폭행(5년 이하)에 비하여 법정형의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유형을 분류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상습범을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할 경우에는, 특수폭행(5년 이하), 누범폭행(7년 이하)만 남게 되어 별도 유형으로 분류할 실익은 없음

4. 유형분류(안)

1안 ⇛ 다수의견(8인)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2	폭행치상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운전자 폭행치상			
5	운전자 폭행치사			
6	누범 · 특수폭행			
7	보복목적 폭행			

2안 ⇛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2	폭행치상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	운전자 폭행치상			
5	운전자 폭행치사			
6	상습 · 특수폭행			
7	누범폭행			
8	보복목적 폭행			

가. 다수의견(8인)

○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5년↓
	공동폭행·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3년↓, 7년6월↓
	상습폭행·상습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3년↓, 7년6월↓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5년↓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5년↓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 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7년6월↓
	누범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1년~12년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1년~12년
	누범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2년~20년

나. 소수의견(2인)

○ 상습범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폭행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존속폭행	형법 제260조 제2항	5년↓
	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3년↓, 7년6월↓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5년↓
제6유형 상습·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습존속폭행	형법 제264조	3년↓, 7년6월↓
	특수폭행· 특수존속폭행	형법 제261조	5년↓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존속폭	형법 제264조	7년6월↓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행		
제7유형 누범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누범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1년~12년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1년~12년
	누범특수존속폭행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2년~20년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기존 유형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Ⅳ. 협박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가. 개정법률 주요 요지 및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2. 양형기준 적용범위

가. 의견 일치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상습군] ☞ 제외(삭제됨)

(2)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항[특수군, 상습특수군] ☞ 제외(삭제됨)

(3)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공동군], 같은 조 제3항[누범군], 제3조 제4항[누범특수군] ☞ 포함

○ 기존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처벌규정으로, 구성요건이 구체화되거나 법정형만 변경된 경우로 설정 대상범죄로 유지함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개정이 없는 유형은 일부 생략함]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제1유형 일반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3년↓)	×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5년↓)	×	
	공동협박·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1/2 가중) (4년6월↓/7년6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1/2가중) (4년6월↓/7년6월↓)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 변경×)
	운전자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5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상습협박·상습존속협박·상습특수협박	형법 제285조(1/2 가중) -상습협박(4년6월↓) -상습존속협박(7년6월↓) -상습특수협박(10년6월↓)	×	
	상습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1년↑)	삭제 -형법 제285조로 포섭	(4년6월↓)
	상습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2년↑)	삭제 -형법 제285조로 포섭	(7년6월↓)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1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7년↓)	-누범요건 구체화 -법정형 변경
	누범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2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1년~12년)	-누범요건 구체화 -법정형 변경
	특수협박·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7년↓)	×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1년↑)	삭제 -형법 제284조로 포섭	(7년↓)
	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2년↑)	삭제 -형법 제284조로 포섭	(7년↓)
	상습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2년↑)	삭제 -형법 제285조로 포섭	(10년6월↓)
	상습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3년↑)	삭제 -형법 제285조로 포섭	(10년6월↓)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2년↑)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1년~12년)	법정형 변경
	누범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3년↑)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2년~20년)	법정형 변경

3. 유형분류

가. 상습범 및 특수군 처리 방안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4. 유형분류(안)

1안 ⇛ 다수의견(8인)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2	운전자 협박치상			
3	운전자 협박치사			
4	누범 · 특수협박			
5	보복목적 협박			

2안 ⇛ 소수의견(2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2	운전자 협박치상			
3	운전자 협박치사			
4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5	보복목적 협박			

가. 다수의견(8인)

○ '상습범인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5년↓
	공동협박 · 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4년6월↓, 7년6월↓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상습협박· 상습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4년6월↓, 7년6월↓
	운전자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5년↓
제6유형 누범·특수협박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7년↓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10년6월↓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누범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1년~12년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1년~12년
	누범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2년~20년

나. 소수의견(2인)

○ 상습범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유형	구 성 요 건	적 용 법 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협박	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존속협박	형법 제283조 제2항	5년↓
	공동협박· 공동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4년6월↓, 7년6월↓
	운전자 협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5년↓
제6유형 상습·누범· 특수협박	상습협박· 상습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4년6월↓, 7년6월↓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4조	7년↓
	상습특수협박· 상습특수존속협박	형법 제285조	10년6월↓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누범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1년~12년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1년~12년
	누범특수존속협박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2년~20년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기존 유형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Ⅴ.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가. 개요

○ 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은 2014. 3. 31. 의결되어 2014. 10.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2016. 1. 6. 폭력행위처벌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 삭제되거나 법정형이 변경되었음

○ 위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 이하에서는 법률 개정이 있는 대유형1 [체포・감금]에 대하여 논의함

나. 개정법률 주요 요지

○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폭력행위처벌법 부분의 개정사항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해당범죄	개정내용	비고
제2조 제1항	상습군	삭제	형법으로 흡수
제2조 제2항	공동군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변경 X
제2조 제3항	누범군	요건구체화 & 법정형 감소	폭력행위처벌법에만 존재하는 죄명
제3조 제1항	특수군	삭제	형법으로 흡수
제3조 제3항	상습특수군	삭제	**처벌규정 없어짐**
제3조 제4항	누범특수군	요건구체화 & 법정형 감소	폭력행위처벌법에만 존재하는 죄명

2. 양형기준 적용범위

가. 의견 일치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상습군] ☞ 제외(삭제됨)

(2)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항[특수군, 상습특수군] ☞ 제외(삭제됨)

(3)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공동군], 같은 조 제3항[누범군], 제3조 제4항[누범특수군] ☞ 포함

○ 기존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처벌규정으로, 구성요건이 구체화되거나 법정형만 변경된 경우로 설정 대상범죄로 유지함

나. 기존 유형에 따른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일반적 기준

[개정이 없는 유형은 일부 생략함]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10년↓)	×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7년↓)	×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2년↑)	×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1/2가중) (7년6월↓, 15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1/2가중) (7년6월↓, 15년↓)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 변경×)
제3유형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1/2가중) -특수체포·감금(7년6월↓) -특수존속체포·감금(15년↓) -특수중체포·감금(10년6월↓) -특수중존속체포·감금(3년↑)	×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1/2가중) -상습체포·감금(7년6월↓) -상습존속체포·감금(15년↓) -상습중체포·감금(10년6월↓) -상습중존속체포·감금(3년↑)	×	
	상습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2호 (2년↑)	삭제 -형법 제279조로	-상습체포·감금 (7년6월↓)

			포섭	-상습존속체포·감금(15년↓)
	상습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3년↑)	삭제 -형법 제279조로 포섭	상습존속체포·감금(15년↓)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2조 제3항 (2년↑, 3년↑)	폭처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1년~12년, 2년~20년)	-누범요건 구체화 -법정형 변경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1항 (2년↑, 3년↑)	삭제 -형법 제278조로 포섭	특수체포·감금(7년6월↓) -특수존속체포·감금(15년↓)
	상습특수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2호 (3년↑)	삭제	
	상습특수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5년↑)	삭제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처법 제3조 제4항 (3년↑, 5년↑)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3호 (2년~ 20년, 3년~25년)	법정형 변경

3. 유형분류

가. 상습범 처리 방안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나. 특수군 처리 방안

(1) 다수의견(5인) : 특수군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가) 상습상해, 공동상해와 동일하게 1/2 가중 형식을 취하고 있음

○ 형법상 특수체포·감금의 법정형이 체포·감금죄에 정한 형의 1/2를 가중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 동일하게 1/2 가중 형식을 취하고 있는 공동체포·감금이 제1유형에 포섭되어 양형인자로 반영되고 있음

○ 상습범과 동일한 형식(1/2 가중)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습범과 달리 취급하기 어려움

○ 공동군, 상습군, 특수군의 법정형이 유사하므로 일반체포·감금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일관성 있음

번호	범죄군	죄명	법정형
1	공동군 (1/2가중)	공동체포·감금	7년6월↓
		공동존속체포·감금	15년↓
2	상습군 (1/2가중)	상습체포·감금	7년6월↓
3		상습존속체포·감금	15년↓
4		상습중체포·감금	10년6월↓
5		상습중존속체포·감금	3년↑
6	특수군 (1/2가중)	특수체포·감금	7년6월↓
7		특수존속체포·감금	15년↓
8		특수중체포·감금	10년6월↓
9		특수중존속체포·감금	3년↑

-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의 법정형이 상당하긴 하나, 양형기준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별도로 유형분류를 할 실익은 없음(기존에도 별도로 유형분류하지 않았음)

(나) 특수체포·감금의 전체적인 형량이 일반체포·감금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에 포섭 가능함

○ 형량분포 검토[2012년~2016년 선고된 단일범(동종경합범 포함) 사건]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	4	5	6	8	10	12	14	15	16	18	20	24		
특수감금	수	0	0	0	5	0	3	6	0	0	0	0	0	0	14	9.43
	비율	0.0	0.0	0.0	35.7	0.0	21.4	42.9	0.0	0.0	0.0	0.0	0.0	0.0	100.0	

대표사건명		형량(월)													전체	평균형량
		2	4	5	6	8	10	12	14	15	16	18	20	24		
특수체포	수	0	0	0	0	0	0	0	1	0	0	0	0	0	1	14.00
	비율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 일반체포·감금의 권고형량 범위(감경: ~8월, 기본: 6월~1년, 가중: 8월~1년6월)에 포섭되므로, 특수군을 일반체포·감금의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하여도 무리가 없음
- 상습체포·감금은 양형기준 설정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음

(2) 소수의견(4인) : 특수군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가) 특수체포·감금의 성격에 비추어 일반체포·감금과 차별화 필요성 있음

○ 특수체포·감금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체포·감금과 차별하여 유형분류할 필요 있음

○ 유형분류는 법정형이나 선고형량만을 기준으로 분류하기보다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범죄에 적절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이 양형기준의 존립의의에 부합함

(나) 특수체포·감금은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별도 유형분류가 필요함

(3) 보류의견(1인)

4. 체포·감금 유형분류(안)

①안 ⇛ 다수의견(5인)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2	보복목적 체포·감금			
3	누범체포·감금			

②안 ⇛ 소수의견(4인)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2	보복목적 체포·감금			
3	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가. 다수의견(5인)

○ '상습범인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을 휴대한 경우'를 특별양형인자로 반영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10년↓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7년↓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2년↑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7년6월↓ 15년↓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8조	7년6월↓ 15년↓ 10년6월↓ 3년↑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7년6월↓ 15년↓ 10년6월↓ 3년↑
제3유형 누범체포·감금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1년~12년 2년~20년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3호	2년~20년 3년~25년

나. 소수의견(4인)

○ 상습범, 특수군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 일반적 기준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5년↓
	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6조 제2항	10년↓
	중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1항	7년↓
	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7조 제2항	2년↑
	공동체포·감금, 공동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호	7년6월↓ 15년↓
제3유형 상습·누범	특수체포·감금, 특수존속체포·감금, 특수중체	형법 제278조	7년6월↓ 15년↓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특수체포·감금	포·감금, 특수중존속체포·감금		10년6월↓ 3년↑
	상습체포·감금, 상습존속체포·감금, 상습중체포·감금, 상습중존속체포·감금	형법 제279조	7년6월↓ 15년↓ 10년6월↓ 3년↑
	누범체포·감금, 누범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3호	1년~12년 2년~20년
	누범특수체포·감금, 누범특수존속체포·감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2호, 제3호	2년~20년 3년~25년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기존 유형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Ⅵ.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1. 양형기준 수정의 배경

가. 개요

○ 현행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2015. 2. 2. 의결되어 2015.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후 손괴범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폭력행위처벌법 일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2016. 1. 6. 폭력행위처벌법 중 일부 조항이 개정, 삭제되거나 법정형이 변경되었음

○ 위와 같은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형분류 및 권고 형량범위를 재검토하고, 양형인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범위에서 수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나. 개정법률 주요 요지

○ 폭력행위처벌법 개정 : 상해범죄 논의와 같음

다. 폭력행위처벌법 개정사항 정리

○ 폭력행위처벌법 부분의 개정사항을 간단히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해당범죄	개정내용	비고
제2조 제1항	상습군	삭제	**처벌규정 없어짐**
제2조 제2항	공동군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변경 X
제2조 제3항	누범군	요건구체화 & 법정형 감소	폭력행위처벌법에만 존재하는 죄명
제3조 제1항	특수군	삭제	형법으로 흡수
제3조 제3항	상습특수군	삭제	**처벌규정 없어짐**
제3조 제4항	누범특수군	요건구체화 & 법정형 감소	폭력행위처벌법에만 존재하는 죄명

2. 양형기준 적용범위

가. 의견 일치

(1)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상습군] ☞ 제외(삭제됨)

(2)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항[특수군, 상습특수군] ☞ 제외(삭제됨)

(3)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공동군], 같은 조 제3항[누범군], 제3조 제4항[누범특수군] ☞ 포함

○ 기존 설정 대상범죄에 포함되어 있던 처벌규정으로, 구성요건이 구체화되거나 법정형만 변경된 경우로 설정 대상범죄로 유지함

나. 구성요건, 법정형 및 개정내용 정리

○ 일반적 기준

[개정이 없는 유형은 일부 생략함]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제1유형 재물손괴 등	재물손괴 등	형법 제366조 제1항 (3년↓)	×	
	중손괴	형법 제368조 제1항 (1년~10년)	×	
	공동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1/2가중) (4년6월↓)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1/2가중) (4년6월↓)	적용법조만 변경 (실질 변경×)

○ 상습·누범·특수손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법정형)	개정내용(법정형)	비고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5년↓)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1년↑)	×	
	상습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1년↑)	삭제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1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누범요건 구체화 -법정형 변경
	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 (1년↑)	삭제 -형법 제369조 제1항으로 포섭	(5년↓)
제2유형 상습특수·누범특수손괴	상습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2년↑)	삭제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2년↑)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1년~ 12년)	법정형 변경
제3유형 문화재특수손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4년6월~45년, 3년~45년)	×	

3. 유형분류

가. 상습범 처리 방안

○ 상습범 처벌규정 삭제

나. 특수군 처리 방안

(1) **의견 일치 : 별도 유형으로 분류**

○ 특수/누범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한 폭력범죄군과 균형을 고려

○ 대유형2 > 소유형3 [문화재특수손상]이 특수손괴와 동일한 구성요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구성요건의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함

4. 유형분류(안)

【의견일치】

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 · 특수손괴 등			
2	누범특수손괴			
3	문화재특수손상			

○ 다만, 소유형1에 포함되어 있던 특수공익건조물파괴(1년 이상)는 특수재물손괴(5년 이하)가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낮아져, 위 두 죄명을 동일 유형에 포함하기에 법정형에 차이가 발생하여 소유형2 [누범특수손괴]의 권고 형량범위를 적용하기로 함

○ [유형의 정의 및 법정형 정리]

-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수재물손괴 등	형법 제369조 제1항	5년↓
	누범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7년↓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1년~ 12년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1년~ 12년
	특수공익건조물파괴	형법 제369조 제2항	1년↑

제3유형 문화재특수손상	지정문화재・가지정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4년6월~45년, 3년~45년

5. 나머지 유형에 대한 논의 결과

○ 기존 유형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

Ⅶ. 향후 일정

○ 공갈, 권리행사방해,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정범위・유형분류] 검토

○ 일시 : 2017. 9. 25.(월) 16:00